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황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02

발의연월일: 2020. 11. 30.

발 의 자:황 희·기동민·김경협

김병기 · 김병주 · 김진표

박성준 • 안규백 • 한준호

홍영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대체복무요원이 징역 등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형의 집행일수 등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3항 중 "불기소처분 또는 재판"을 "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나 법원의 재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	제18조(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
간) ①·② (생 략)	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복	③
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	
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<u>불기</u>	사법경찰관
<u>소처분 또는 재판</u> 등으로 석방	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
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	<u>나 법원의 재판</u>
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	
할 수 있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